의 안 번 호	제 2019 - 13호
의 결 연 월 일	2019. 7. 5. (제 6 회)

의결사항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융자금 증액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 출 자	위원장 박 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9. 7. 5.

1. 의결주문

○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2019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융자금(2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

3. 주요내용

○ **2019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융자금 210억원 증액**

○ **여유자금운용의 단기자금운용에서 210억원 감액**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다. 관계부처협의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 협의 완료

5.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심의

< 별 지 >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융자금 증액 -

2019. 7. 5.

보건복지부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대상・용도)**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한도·상환)**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최대 5년간 원금균등 분할상환(미거치 또는 거치 1~2년 선택)

○ **(대부이자)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금리('19년 2분기 연 1.87%) 적용, 연체이자는 대부이자의 2배

○ **(규모・시행주체)** 2019년도 38,925백만원

- 신청・접수, 대부금 지급결정, 사후관리 등 **연금공단 직접 수행**

□ 추진 경과

○ '11.4월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사업추진계획**(안) **의결**

○ **'12.5월 대여사업 시행**(국민연금실버론)

○ '13.9월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의결**

- **연대보증인 입보** 및 **보증수수료**(연 0.5%) **폐지**

○ '15.2월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사업 개선방안 의결

- **대부한도 증액**(최고 500만원→750만원) 및 거치기간(미거치 또는 거치 1~2년) 설정

○ '18.12월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 사업 개선방안 의결

- **대부한도 증액**(최고 750만원→1,000만원)

2. 계획 변경내역 및 변경 사유

□ 변경내역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융자금 210억원 증액

○ 여유자금운용의 단기자금운용에서 210억원 감액

□ 변경사유

○ 2019년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당초 예산은 389억원으로, 7월말 소진이 예상되어 연말까지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융자금을 추가 확보 긴요

-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 대부금 한도상향(750→1,000만원,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18.12)내용이 보도('19.1)되면서 신청 급증*

  * 2018년 1분기 1,496건, 2019년 1분기 3,460건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1% 증가

- 또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따라 잠재 수요가 실제 대부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

3. 추가소요 산출 명세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융자금 210억원 증액

○ 대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2019년 1분기를 제외하고, 4월~5월 월평균 대부자 수(786건)를 감안하되,

- 최근 3년간 상반기(1~5월) 평균대부건수(595건,A) 대비 하반기(6~12월) 감소된 대부건수(533건,B)의 비율(B/A, 89.6%) 고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집행현황 및 전망 >

(2019.5.31.현재, 단위 : 백만원)

2019년 계획액(A)	2019년 소요액			과부족액(B-A)
	집행액①	향후소요액	소계(B)	
38,925	30,325	29,600	59,925	21,000

◇ **추가소요예산**(21,000백만원) **산출근거**

○ **추가소요액(210억원) = 향후소요액**(296억원) **- 집행잔액**(86억원)

- 향후소요액 : **296억원 = 704명*** × **600만원**** × 7개월

* **786명**(최근 2개월(4.1.~5.31.)간 월 평균 대부자 수) x **89.6%**(최근 3년간 1~5월 평균대부건수(595건,A) 기준 6~12월 대부건수(533건,B)의 비율(B/A) 반영②)

- 매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대부건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최근 2개월(4.1.~5.31.) 1인 평균 대부금액

※ ① 집행현황(303억원 집행, 잔액 86억원)

(2019.5.31.현재, 단위: 건, 백만원)

2019년 누적		1월		2월		3월		4월		5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32	30,325	1,544	9,212	1,020	6,198	896	5,484	**849**	5,180	**723**	4,251

※ ② 최근 3년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대부 건수 비율 현황

(단위 : 건, %)

구분	1~5월 월평균건수(A)	6~12월 월평균건수(B)	B/A
3년 평균	**595**	**533**	**89.6**
2016년	631	513	81.3
2017년	599	546	91.2
2018년	556	541	97.3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명세서(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계획현액 (A)	2019년 변경		비 고
		요구(B)	증감 (B-A)	
합 계	**119,165,219**	**119,165,219**	-	
[7300]국민연금기금운영비	513,131	513,131	-	
[7400]국민연금운영(여유자금운영위탁등)	**225,808**	**246,808**	**21,000**	
[7431]국민연금공단사옥확보	51,053	51,053	-	
[7432]국민연금제도운영사업	56,580	56,580	-	
[7433]국민연금복지사업	47,068	68,068	21,000	
[424]복지타운운영사업비	8,143	8,143	-	
[425]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38,925	59,925	21,000	
[450]융자금	38,925	59,925	21,000	
[450-04]기타민간융자금	**38,925**	**59,925**	**21,000**	**융자금 추가 확보**
[7478]국민연금징수업무위탁사업	71,107	71,107	-	
[7600]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23,019,300	23,019,300	-	
[9700]여유자금운용	**95,406,980**	**95,385,980**	**△21,000**	
[9720]여유자금운용(국민연금기금)	95,406,980	95,385,980	△21,000	
[972]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	2,334,301	2,313,301	△21,000	
[470]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2,334,301	2,313,301	△21,000	
[02]통화금융기관예치금	**2,334,301**	**2,313,301**	**△21,000**	
[974]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	19,654,575	19,654,575	-	
[976]국민연금기금 국채외채권매입	34,338,104	34,338,104	-	
[977]국민연금기금 주식매입	20,460,000	20,460,000	-	
[978]국민연금기금 기타유자증권매입	18,620,000	18,620,000	-	

참고 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실적

□ 연도별 대부 현황

○ 2012년부터 **총 57,134명**에게 **2,604억원** 대부

○ 긴급자금 대부의 취지를 감안 **신청당일 67.2%**(38,399건), **익일까지 94.9%**(54,203건) 지급

(2019.5.31.누계, 단위: 건, 백만원)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5월
건수	**57,134**	10,152	7,095	7,198	7,528	6,747	6,816	6,566	5,032
금액	**260,365**	39,868	27,747	27,600	34,100	34,200	34,199	32,326	30,325

□ 용도별 대부현황

○ 전·월세자금 대부가 전체 건수의 60.1%(34,345건), 금액으로는 71.6%(1,864억원)를 차지함

(2019.5.31.누계, 단위: 건, 백만원, %)

계		전·월세자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134 (100)	260,365 (100)	34,345 (60.1)	186,356 (71.6)	21,814 (38.2)	68,911 (26.5)	756 (1.3)	3,996 (1.5)	219 (0.4)	1,103 (0.4)

□ 대부금 상환현황

○ 1,763.6억원 중 1,753.7억원(99.44%)을 상환, 9.9억원 미상환*(0.56%)

* 대부자 사망 시 유족연금 지연청구, 상속후 납부지연 및 연금지급 중지 등

○ **상환방법**은 연금공제 56,846명(99.5%), 자동이체 288명(0.5%)

(2019.5.31.누계, 단위: 백만원, %)

상환대상	상환	미상환(연체)
176,355(100)	175,368(99.44)	987(0.56)

○ **미상환율**은 다른 서민금융상품*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 ('18.12월 기준) 미소금융 6.6%, 햇살론 9.1%, 새희망홀씨 2.58%, 바꿔드림론 28.6%

참고 2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규정**

□ 국가재정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 국민연금기금 해당)**

□ 국가재정법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규정)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법률 검토(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재부 협의 및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사항 (주요항목의 20%이내 변경)

* **여유자금운영 〔단기자금운용〕 (9700항, 예산액 95조4,070억원) → 국민연금운영 [여유자금운영위탁등](7400항, 예산액 2,258억원)으로 210억원 변경** (9700항 0.02% 감, 7400항 9.3% 증)